행복한 도민
신뢰받는 의회

제351회 임시회
2016. 10. 14.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충 청 북 도 의 회
정 책 복 지 위 원 회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69호

2016. 10. 14.(금)
정 책 복 지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이양섭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6년 9월 27일

○ 회부일자 : 2016년 9월 28일

다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7일

○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**원안가결**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이양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,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,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및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설치, 기금 ‘운영’을 관계 법령에 따른 ‘운용’으로 개정 (안 제1, 2조)

○ 기금의 용도에 관해 포괄 규정으로 변경 (안 제5조)

- (현행) 학자지원금, 직업훈련지원금, 자립정착금, 평생교육시설 기자재 등 지원
- (개정) 학자금지원,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, 청소년 평생교육 지원, 그 밖에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

○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가. 조례안 제출 배경

○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56조에 따라 197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, 979,083천원(2015년 말)이 조성되어 있으며, 기금의 사용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되고 있음.

※「청소년 기본법」

제56조(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 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(2015. 7.24)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-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·운용 기금이 아님-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였으며,

※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○ 또한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 수준으로 명시하고,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가하여 향후 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○ 안 제1조의 용어 중 ‘설치운영’을 ‘설치 · 운용’으로 변경함.

- 사전적 의미로 ‘운영(運營)’은 조직이나 기구 등을 관리하면서 움직여 간다는 의미로 학교, 기업, 대회 등과 어울려 사용되지만, ‘운용(運用)’은 기금, 예산 등과 어울려 사용됨.
- 관계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서도, 기금의 ‘운용’으로 표기하고 있는 바, 해당 조항에서 ‘운영’보다는 ‘운용’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.

○ 안 제2조(기금조성) 에서, 제1호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”을 “충청북도의 출연금”으로 해당 출연 주체를 구체화 시켜 명시함.

○ 안 제5조에서, 조명을 “(기금지급대상등)” 에서 “(기금의 용도)”로 변경하고, 지급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, 안 제6조((대상추천자의 선발)를 삭제함.

- 기금의 용도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※「청소년 기본법」

제56조(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·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현행 조례에는 기금 용도를 지원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,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,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로 규정하고 있고, 지원대상도 충북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·

미진학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음.

- 기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세부 지원 내용 등과 관련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있음.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, 대상의 확대 · 축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불편함이 있음.
  - **현행 조례 제6조 근로청소년 추천과 관련해서는** 교육부의「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이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」에 따라 설치·운용되었던 충북도 내 야간제 특별학급의 해소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이 곤란한 바, 이를 시장 · 군수 추천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임.

- 따라서, 본 조례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, 그 밖에 대상 및 세부 지원 내용 등은 제8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 운용과 개정에 있어 효율성 및 합리성을 기하도록 함.

○ 안 제7조는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0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.

다. 종합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정하였으며, 기금의 운용 및 개정에 있어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지원대상 등 세부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내용 및 법적으로도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설치운영”을 “설치ㆍ운용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출연금

제2조제2호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로 구분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제1항 중 “통합기금”을 “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
2.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
3.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
4.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

제6조를 삭제하고, 제7조를 제6조로 하며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설치 · 운용 ----------.
제2조(기금조성)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<신 설> 2.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	제2조(기금조성) ----------. 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출연금 2. 기금의 운용 수익금 3. 그 밖의 수입금
제4조(기금관리 · 운용) ① 기금은 충청북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 략)	제4조(기금관리 · 운용) ① ----------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-----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기금지급대상등) ① 기금의 지급대상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· 미진학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 지급한다. 1. 학자(진학)지원금 :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초·중등교육법에 정한 중·고등 학교 입학,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2. 직업훈련지원금 :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,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. 자립정착지원금 : 농·어촌 정착 의욕이 확실하고 영어·농사업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·어촌청소년 ② 평생교육법에 의거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 등을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. ③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 1.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 2.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 3.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4.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

제6조(대상추천자 및 선발) ① 지원사업 기금지원 대상자는 시장·군수가 시·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. 단,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청소년은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시장·군수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한다.	<삭 제>
제7조(지급정지 및 회수등)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.	제6조(지급정지 및 회수등)
<신 설>	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